

2016

한국국제경제법학회 이사회 및 총회

□ 일시 및 장소

- 2016년 1월 20일(수) 7시 30분
- 광화문 코리아나 호텔 2층 다뉴브내 다이아몬드 홀

안 건

I. 보고안건

1. 신임집행부 소개

- 수석부회장 : 서철원
- 기획이사 : 유준구
- 연구이사 : 오선영
- 출판이사 : 김두수
- 부 회 장 : 이재민 / 정영진
- 총무이사 : 박언경
- 국제이사 : 유희진 / 이세련
- 사무국장 : 박주석

2. 2016년 주요일정 소개

일자	학술행사명	비고
3월 25일	신진학자학술대회	
3월 31일	국제경제법연구 제14권 1호 발간	2월 20일 논문접수마감
6월 10일	국제학술대회 (국내개최)	상사중재원 공동개최 추진
7월 31일	국제경제법연구 제14권 2호 발간	6월 20일 논문접수마감
8월 4주차	WTO 모의재판 대회	산업통상자원부 후원
10월 24일	국제학술대회 (해외개최)	TPP 참여국과 공동 개최
11월 30일	국제경제법연구 제14권 3호 발간	10월 20일 논문접수마감
12월 15일	국내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 기타		
통상법포럼 개최 추진 : 월 1회 개최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공동개최)		

Ⅱ. 이사회 심의안건

1. 편집위원 선출

○ 관련규정 : 편집위원회 규정 제3조 2항 ‘전체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 / 편집위원회 규정 제6조 ‘전체편집위원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교체’

○ 편집위원 구성현황

년도	위원장	위 원
2010	정찬모	강준하, 김여선, 배정생, 심영규, 박원석
2011상반기 2011하반기	정찬모 김대원	강준하, 김여선, 배정생, 심영규, 이재민 마 광, 조영진
2012	김대원	강준하, 김여선, 배정생, 심영규, 이재민 마 광, 조영진, 이길원, 이로리
2013	김대원	강준하, 김여선, 배정생, 심영규, 이재민 마 광, 조영진, 이길원, 이로리
2014	성재호	강준하, 김여선, 배정생, 심영규, 이재민 마 광, 조영진, 이길원, 이로리
2015	성재호	강준하, 김여선, 배정생, 심영규, 이재민 마 광, 조영진, 이길원, 이로리

○ 편집위원 관련 학술지평가기준

지 역	편집위원의 소속기관이 6개 이상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경우(4점)
-----	--------------------------------------

- 소속기관 소재지 지역구분 기준 (국내 17개, 국외 6개)

①서울, ②세종, ③인천, ④대전, ⑤대구, ⑥광주, ⑦울산, ⑧부산, ⑨경기, ⑩강원, ⑪충남, ⑫충북, ⑬전남, ⑭전북, ⑮경남, ⑯경북, ⑰제주, ⑱아시아, ⑳오세아니아, ㉑북미, ㉒중남미, ㉓ 유럽, ㉔아프리카

편집위원장의 안정성	임기 2년 이상 (2점)
------------	---------------

- 관련 규정에 명문화 되어야 함 (편집위원회 규정개정 필요)

편집위원(장)의 전문성

편집위원(장)의 대외활동 및 연구실적 (15점)

- 최근 3년간의 연구실적 및 대외활동 평가

- 최근 3년간 연구실적과 대외활동으로 평가
- 편집위원회 관련 규정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운영되고 있는가 (편집위원 선정기준과 절차, 편집위원회 운영의 적합성 등 포함)
- 논문실적 및 저역서 중 대표적인 업적 5편 이내 선택하여 기재하고, 대외활동사항 또한 대표적인 활동 5건 이내로 선택하여 기재함

○ 결정사항

- 2016~2017년 편집위원장으로 최승환 교수 선출
- 한국연구재단 평가기준 및 학회의 관행에 따라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임을 확인하고, 편집위원회 규정에 명문화 할 것을 의결함.
이에 따라 편집위원회 규정 제6조 ①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함.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편집위원회 위원 구성 건은 편집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의결
- 관련사항으로 편집위원회 규정의 개정 권한을 편집위원회에 부여하고 있는 현행 편집위원회 규정 제9조의 적절성에 대해 검토를 진행한 바, 동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토록 함.

현행 편집위원회 규정	개정안	개정이유
제9조(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편집위원회 위원 5인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편집위원회 회의에서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제9조(개정) <u>이 규정의 개정은 직무이사회 혹은 편집위원회의 발의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의결한다.</u>	하기 정관 제15조(이사회의 의결) (1)항 4호의 내용과의 통일성 확보를 고려

2. 신 국제경제법 개정판 발간전

○ 현황 및 논의사항

- 2013년 1월 보정판 출간
- 2015년 박영사에서 개정요청 의견 문의가 있었음.

○ 국제경제법 단행본 발간의 약사 확인

- 2006년, 박노형, 이재형 교수가 주축이 되어 추진. 17인 참여. 회장직속기구의 성격으로 추진
- 2009년, 개정판 발간작업 추진하였으며, 2013년 교과서 개정위원회 구성함
박덕영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5인 위원회 구성. 신청자 접수 이메일 발송 후 집필자 결정
1인에게 최대 2개의 장에 대한 집필의뢰토록 하며, 책임자에게 100만원, 2명의 조교에게 150만원 지급.
집필진에게는 이사회비를 면제할 것(인세로 대체)을 당시 이사회에서 의결함.

○ 결정사항

- 신간형태로 추진할 것을 의결
- 교재 발간 위원회(TF) 구성을 의결 : 회장이 위원장을 추후 위촉하고 위원장이 위원회 위원을 구성토록 함.
- 게재료 부과 건에 있어서는 ①등재지에서도 원고모집의 어려움이 있다는 점, ②당초 재능기부의 성격에서 출발하였다는 점, ③학회의 대표성, ④출판사의 저자구성에 대한 선호도, ⑤독자의 인지도, ⑥경쟁이 몰린 장에 대해 게재료를 부과하는 방안의 적절성 등 이사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의견을 고려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함.
- 이사회 및 총회 종료 후 개최된 직무이사회에서는 “서철원 수석부회장”을 위원장으로 결정하고, 회장이 위촉함.

3. 2016년 WTO 모의재판 준비 및 WTO 모의재판 위원회 운영건

○ 현황 및 논의사항

- 2014년 12월 정기총회에서 관련 규정 신설 (정관 제17조 위원회)
- 2016년 WTO 모의재판 준비 및 위원회 운영 방안 논의

○ 경과 및 약사

- 신희택, 장승화 교수의 주도로 대회가 출범
- 제1회 대회, 서울대 단독 주관으로 개최(서울대)

- 제2회 대회, 서울대에서 개최. 산업부 후원 개시. 다만, 국회에서 특정대학에 지원하는 것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었음.
- 제3회 대회, 학회 참여 시작. 성균관대학교(성재호 교수)에서 개최
- 제4회 대회, 연세대학교(박덕영 교수)에서 개최
- 제5회 대회, 고려대학교(이재형 교수)에서 개최
- 제6회 대회, 서울대학교(이재민 교수)에서 개최
- 동 대회의 성격상 산업부 예산에서 일반관리비 책정은 불가하기에, 500만원 상당의 출판비를 지원받는 방향으로 협의가 이루어짐

○ 결정사항

- WTO 모의재판 대회는 학회주관 행사임을 확인함.
- WTO 모의재판 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원 구성 및 운영 권한 부여
- 추후 위원장께 학회의 위상 정립 등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요청하기로 함

Ⅱ. 총회 심의안건

1. 임원개선건 - 회비미납 임원의 연임제한 의결건

○ 관련규정

- 정관 제8조 (2) 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정관 제9조 (2) 3년 이상 연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회원은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 정관 제12조 (5) 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정관 제13조 (3)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되며 회원은 관련 임원들을 추천할 수 있다.
- 회비 미납 임원(이사)의 연임제한 의결

○ 현황 및 방안

- 2년 이상 회비미납 임원: 5명
- 2년 이상 회비미납 임원 중 평생회비 납부자: 2명

- 이사현황(59명)

강병근/ 강 호/ 강준하/ 권현호/ 고준성/ 김규태/ 김두수/ 김대식/ 김대원/
김대중/ 김병일/ 김여선/ 김인숙/ 김종범/ 김준기/ 김채형/ 류예리/ 마 광/
박노형/ 박덕영/ 박민규/ 박언경/ 박원석/ 박지현/ 배정생/ 서원상/ 서철원/
성재호/ 손기윤/ 신희택/ 심영규/ 안덕근/ 오선영/ 왕상한/ 유선봉/ 유준구/
유희진/ 이길원/ 이로리/ 이상모/ 이성덕/ 이세련/ 이영애/ 이재민/ 이재형/
이지형/ 이환규/ 장승화/ 정영진/ 정찬모/ 조영진/ 조희문/ 주진열/ 최송자/
최승환/ 최원목/ 최정순/ 최혜선/ 표인수

○ 결정사항

- 회원미납 이사에게 2월말을 기한으로 하여, 회비납부 요청공문 발송
- 동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는 이사는 임원개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의결함.

2. 정관개정

○ 주요내용

- 이사회에 관한 규정 신설
- 임원의 회비 규정 신설

○ 신규대조표 및 개정이유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제15조(이사회에 의결) 이사회는 참여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단, 전화나 E메일 등의 통신 수단에 의한 위임 및 의사표시에 의한 참여도 가능하다.	제15조(이사회에 의결) (1)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개선 2. 편집위원의 선출 및 개선 3. 입회금 및 회비의 결정 4. 본 정관을 집행하기 위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5. 정관개정안 6. 기타 학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직무이사회 또는 각종 위원회가 부의하는 안건 (2) 현행과 동일	제15조에서는 이사회에 의결절차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의결사항에 대한 규정이 없음. 다만, 개별조항에서 임원선출의 권한, 회칙의 개정의결만 규정되어 있음.

제17조(위원회) (1) 본 학회에는 제도개선 위원회, WTO 모의재판 위원회, 기금 위원회, 국제학술대회 준비위원회 등 학회 운영 및 사업에 관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7조(위원회) (1) 본 학회에는 학술상위원회, WTO 모의재판 운영위원회, 학회발전위원회 등 학회 운영 및 사업에 관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3), (4)항은 현행과 동일	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 및 학회사업 목적의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개폐를 결정.
제18조(본회의 자원) (1) 본 학회의 운영을 위한 재원은 회원의 입회금, 회비, 찬조금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2) 입회금 및 회비 등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18조(본회의 자원) (1) 좌동 (2) 임원의 회비는 다음으로 한다. 1. 회장 300만원 2. 수석부회장 200만원 3. 부회장 100만원 (3) 기타 입회금 및 회비 등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학회운영기금의 확보를 통한 학회재정의 강화. 정관 제18조(본회의 자원)에서는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정관에 반영토록 함.
	부칙 (1) 이 정관은 2015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 이 정관 개정 후 제18조 임원의 회비는 2016년 현 집행부부터 적용하여 시행한다.	

3. 한국국제경제법학회 학술상 규정 제정

○ 경과보고

- 2015년 10월 29일 임시이사회 의결사항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관련 규정 제정코자 함.
- 첨부 “한국국제경제법학회 학술상 규정” 참조

○ 경과 및 약사

- WTO 판례평석상으로 출범 (장승화 교수 매년 100만원 출연)
- 후에 신진학자를 대상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수여 중임.
- 2015년 임시이사회에서 학술상 운영에 대한 규정마련의 필요성 의결

○ 결정사항

- 별도의 학술상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토록 결정
- 수석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편집위원장과 출판이사를 당연직 위원을 구성하며, 출판이사는 간사의 역할을 수행함.
-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할 것을 의결

4. 기타안건

(1) 학회발전위원회 신설 제안

○ 제안이유

- 학회기금의 용처를 결정하는 것을 포함한 학회의 장기적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위원회의 필요성 제시

○ 결정사항

- 학회발전위원회 신설 의결
- 위원회의 구성
 - * 위원장 : 직전 회장
 - 위 원 : 전임 회장, 현 회장(간사)

(2) 국제경제법 교재 참여자에 대한 이사회비 면제 의결 폐지 제안

○ 제안이유

- 현재 59명의 이사 중 35명 내외의 이사가 저자로 참여중임.
- 이들 저자들이 이사 중의 상당 수를 차지함으로 인하여 학회 경상비 수익의 감소가 초래됨.
- 이러한 학회 운영현황을 고려하여 교재 참여자에 대하여 회비면제를 의결한 종전 이사회 결정을 폐지할 것을 제안함

○ 결정사항

- 상기의 제안이유에 공감하며, 종전 이사회 결의를 철회할 것을 결정함
- 2016년 회비 징수 때부터 동 의결사항을 적용함.

한국국제경제법학회 학술상 규정

2016년 1월 20일 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국제경제법학회(이하 “학회”라 칭한다)의 한국국제경제법학회 학술상(이하 “학술상”이라고 칭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학술상위원회의 구성)

- ① 이 규정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학술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칭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수석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편집위원장과 출판이사를 당연직 위원으로 선임된다. 출판이사는 학술상 운영위원회 간사의 역할을 수행한다.
- ③ 상기 2항에 포함되지 않는 위원에 대해서는 직무이사회의 동의를 얻은 자를 회장이 위촉 임명한다.
-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당해연도 회장은 3월 31일까지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 활동의 연속성을 위하여 5인 이상의 위원 중에 전년도 위원이었던 자가 최소 2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3조 (학술상위원회의 운영)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위원 출석으로 성립하며, 위원장을 제외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의 경우 위원장이 결정 투표권을 행사한다. 위임을 통한 출석과 표결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 ③ 위원회는 당해 연도 12월 15일까지 시상여부와 시상자를 결정한다.

제4조 (자격)

학술상은 국제경제법 및 이와 관련된 분야에서 제5조에서 규정한 해당기간에 우수한 논문이나 저서를 발간한 회원 1인에게 수여한다.

제5조 (심사대상과 선정)

- ① 학술상의 수여를 위한 심사대상은 국제경제법 및 이와 관련된 분야에서 전년도 12월 1일부터 해당 년도 11월 30일까지 발간된 학술저서와 논문으로서 아래의 제2항에서 4항에서 규정된 학술저서와 논문으로 한다. 저서와 논문이 해당기간에 발간되었는가의 여부는 공식 발간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심사대상으로 이전학술연구 업적이 우수한 회원 1인에게 수여한다.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기간 중에 발간된 「국제경제법연구」에 게재된 논문은 자동적으로 심사대상에 포함된다.
- ③ 본 기간 중에서 기타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나 학술저서는 1인 이상의 이사가 추천한 경우 심사대상에 포함된다. 본 조항의 추천을 위하여 출판이사는 해당 년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학술상 심사대상 논문과 저서의 추천에 대하여 2회 이상 이메일로 공지하여야한다.
- ④ 위원회는 2항과 3항에 해당되지 않는 저서나 논문이라도 필요한 경우 독자적으로 심사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 ⑤ 위원회는 1인의 학술상 수상자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적임자가 없을 경우 수상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 (시상)

학술상은 당해 연도 회장이 소집하는 마지막 총회에서 시상한다.

제6조 (개정)

본 규정의 개정은 직무이사회 혹은 위원회의 발의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제7조 (기타)

이 규정의 시행 상 필요한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

제1조 본 규정은 2016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